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상정보공개 특정중대범죄에 음주운전범죄 추가〉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51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0. 11.
3. 회 부 일: 2024.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명 연예인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현재 4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적발건수 역시 2019년 57,200명에서 2023년 55,700명으로 큰 변화가 없고,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 또한 2019년 130,772건에서 2023년 130,150건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라 함)에 따라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제2조)¹⁾에 ①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²⁾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³⁾에 따른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1)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2)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신설></u>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2조(정의)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 다만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13. -----제12호까지의----- ----- -----

개정안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것임.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중대범죄 신상 공개 제도 입법경과 및 논의사항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2023년 10월 24일 제정되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23. 10. 24. 법률 제19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10. 24. 법률 제19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최초의 일반법을 마련한 것임.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이라는 입법취지⁴⁾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i) 피의자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ii)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등에 반하며, iii) 얼굴 공개로 인한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iv) 얼굴 공개는 공익정보보다 단순한 호기심의 발로에 불과하며, v)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켜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실질적인 연좌제로 기능하게 된다는 이유로 신상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하였음.⁵⁾ 이러한 반대의견은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비판 논거로 작용한다고 할 것임.

4)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장영수, 공익으로 포장된 국민적 호기심, 신문과 방송(2009년), pp.50~53; 김희수,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의 인권, 수사연구 제27권제3호, pp.48~54

나.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연혁

상습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⁶⁾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2011년 「도로교통법」⁷⁾에 처음 신설됨.

이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처벌 대상을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2018년 「도로교통법」⁸⁾을 다시 개정함.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제1항)을 반복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6)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7) 구「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 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 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 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구「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⁹⁾한 사람에 대해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148조의2제1항).¹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개정 연혁

음주상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¹¹⁾ 2007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¹²⁾를 신설함.

9)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중 ‘2회 이상 위반’에 대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함에 따라, 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개정됨.

1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희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④ 생략

11)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경합범으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밖에 없었음.

12)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2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후 음주운전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2018년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치사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됨.¹³⁾

다. 점토의견

음주운전 재범율이 여전히 40%를 넘는 현실에서 타인의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¹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됨.

13)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12.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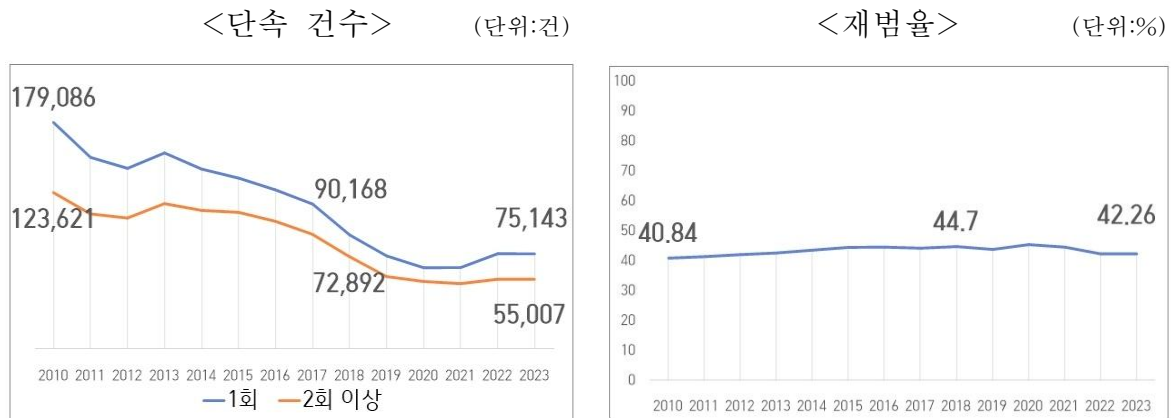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4) 전체 교통사고건수는 2018년 217,148건에서 2023년 198,296건으로, 음주교통사고건수는 2018년 19,381건에서 2023년 13,042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8년 3,781명에서 2023년 2,551명으로, 음주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95명에서 15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2018년 341,712명에서 2023년 283,799명으로, 음주교통사고 부상자수는 25,961명에서 20,628명으로, 음주운전 단속건수도 2010년 초범 179,086건, 재범 이상 123,621건에서 2023년 초범 75,143건, 재범 이상 단속 55,007건으로 각각 감소 추세를 보임.



(통계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표 1] 음주운전자 단속 현황



통계자료: 공공데이터 포털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입법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및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하였던 점,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그 대상 범죄의 범위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¹⁵⁾ 시행된 지 1년여 정도 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이 법의 핵심적 요소인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의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15)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의 범위를 기존 특정강력범죄법 및 성폭력처벌법에서의 공개대상 범위보다 확대할지 여부는 논의 초기부터 관계 기관 간 의견이 엇갈렸음[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4면 등 참조].

둘째, 개정안의 신상정보 공개대상 행위와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대상인 특정중대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대상 중 음주운전금지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¹⁶⁾인 반면,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9호 및 제10호의 특정중대범죄¹⁷⁾는 그 법정형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거나 유기징역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 등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위반 범죄를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추가함에 있어서는 기존 특정중대범죄와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특정중대범죄¹⁸⁾의 경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특수성이 있는 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정형이 낮은 죄들은 공개

1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략

17) 각주 1) 참조

18) 각주 1) 참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 신상정보 공개대상 특정중대범죄의 법정형

	특정중대범죄	법정형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¹⁹⁾	사형, 무기징역, 하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10년이하 징역)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²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²¹⁾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²²⁾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²³⁾	무기징역, 하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²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강간과 추행의 죄에 한정됨)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²⁵⁾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²⁶⁾ 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²⁷⁾	사형, 무기징역, 하한 5년 이상 유기징역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²⁸⁾	사형, 무기징역, 하한 3년 이상 유기징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19)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0)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1)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2)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3)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2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 등에 의한 촉탁 살인(囑託殺人)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생략)
- 2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

셋째, 상습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직접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정할 때에는 먼저 그 대상이 적정한지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 고려하여야 하는데,²⁹⁾ 상습 음주운전자 등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직접 차단 수단이 아니라 간접적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2024. 10. 25. 시행)³⁰⁾와 같이 상습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를 직접적으로 차단할

(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29)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중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시함.

30)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습을 붙여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정리하면, 개정안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음주운전과 그 피해를 예방하려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정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현행 신상정보 공개대상 특정중대범죄와의 균형, 직접적인 음주운전 차단 정책의 우선 고려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방법 및 등록 기준·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발급·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 ⑤ 생략

⑥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및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